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최기영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 개정(법률 제17353호, 2020.6.9. 공포, 2020.12.10. 시행)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유통정보 생성·보관 및 유통증명서 발급에 따른 요건 마련(안 제2조의4, 제2조의5)

법에서 유통정보의 생성·보관 및 유통증명서의 발급 주체를 전담기관 뿐만 아니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확대함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유통정보 생성·보관, 유통증명서 발급을 위한 요건 마련

나.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요건 개선(안 제15조의5)

법 개정애 따라 기존의 지정취소 뿐만 아니라 인증취소 요건을 결격사유에 추가

다.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제 폐지 및 인증제 전환에 따른 인증 요건, 절차 등 개선(안 제15조의14, 제15조의15)

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진입 요건 완화에 따라 인력 및 재정 능력
요건 삭제 등 기존의 지정요건을 인증요건으로 개정
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절차를 마련하고, 기존 지정제 관련 신
청서 등을 인증 신청서 등으로 용어 개정

**라.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및
중계를 위한 인증의 갱신 근거 마련(안 제15조의16)**

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유효기간(3년) 이후에도 해당 인증을
지속할 수 있도록 인증 갱신 근거 마련

**마.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
및 중계를 위한 인증의 사후관리 근거 마련(안 제15조의17)**

인증된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간의 인증요건 유지여부를 확인하고
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및 중계를 보장하기 위한
사후관리 근거 마련

**마.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 범위를 명확화(안
제22조의3)**

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수집의 범위를 반영하고,
개인정보의 활용 범위를 명확히하기 위해 개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(이하 “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은 법 제31조의18 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(이하 “공인전자문서중계자”라 한다)가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유통증명서의 생성·발급 및 보관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성·보관하는 유통정보와 전담기관이 보관하는 유통정보가 동일하도록 조치해야 한다.

제2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작성자, 송신자 또는 수신자(이하 이 조에서 “신청인”이라 한다)는 유통증명서의 발급을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(신청인을 위하여 해당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전자문서를 송신·수신 또는 중계한 경우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신청할 수 있다.

같은 조 제2항 중 “전담기관은”을 “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”으로, “전자서명을 하여야”를 “전자서명(이하 “전자서명”이라 한다)을 해야”로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전담기관은”을 “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”으로, “전담기관의 기명날인을 하여야”를 “전담기관 또는

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기명날인을 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전담기관은”을 “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”으로 “확인하여야”를 “확인해야”로 한다.

제15조의5제2항의 “지정취소”를 “지정취소 또는 인증취소”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 “지정취소”를 “지정취소 또는 인증취소”로 한다.

제15조의9제1항제1호 중 “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공인전자서명”을 “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전자서명”으로 한다.

제15조의14 제목 중 “지정요건 등”을 “인증요건”으로 하고, 제1항을 삭제하고, 기존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법 제31조의18제2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설비: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는 것

가. 전자문서 송신·수신 설비

나. 전자문서의 날짜·시각 및 운용기록을 기록·관리하는 설비

다. 시설·장비 및 정보를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보호설비

라. 유통정보의 생성·보관 및 검증 설비

마. 시스템 관리 및 복제·저장 설비

바. 유통증명서 생성·발급 및 보관을 위한 설비

2. 기술능력: 전자문서의 송신·수신 또는 중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

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”를 “제2항제1호에 따른 설비”로 한다.

제15조의15 제목 중 “지정절차”를 “인증절차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의 “법 제31조의18제3항”을 “법 제31조의18제2항”으로, “지정받으려는”을 “인증을 받으려는”으로, “지정신청서”를 “인증신청서”로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하고, 같은항 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하고, 제3호의 “법 제31조의18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요건”을 “제15조의14제2항 각 호의 요건”으로, 제4호의 “제15조의14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”를 “제15조의14제2항제1호에 따른 설비”로 하고,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한다.)

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,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자가 제15조의14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

같은 조 제4항의 “지정”을 “인증”으로 하고, “신청인에게”를 “신청자에게”로 하고, “신청인”을 “신청자”로 한다.

제15조의16과 제15조의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16(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갱신) ①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

법 제31조의18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(이하 “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”이라한다)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을 유지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인증의 갱신을 신청하여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을 갱신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갱신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.

제15조의17(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사후관리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18제5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.

1. 제15조의14제2항제1호에 따른 설비의 보유 여부 및 안전성
2. 법 제31조의18제4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의 준수 여부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점검을 하기 15일 전까지 해당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점검의 일시, 목적 및 대상 등을 알려야 한다.

제22조의2제5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법 제31조의18제5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사후관리 제22조의3제1항의 “법 제18조의4에 따른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에 관한”을 “다음 각 호의”로, “제19조”를 “제19조 각 호”로 “여권번호”를 “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”로 하고,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의4(유통정보의 생성·보관) ① ~ ② (생략) ③ <신 설>	제2조의4(유통정보의 생성·보관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달기관(이하 “전달기관”이라 한다)은 법 제31조의18 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(이하 “공인전자문서중계자”라 한다)가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유통증명서의 생성·발급 및 보관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성·보관하는 유통정보와 전달기관이 보관하는 유통정보가 동일하도록 조치해야 한다.
제2조의5(유통증명서의 발급) ① 작성자, 송신자 또는 수신자는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유통증명서(이하 "유통증명서"라 한다)의 발급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달기관(이하 "전달기관"이라 한다)에 신청할 수 있다.	제2조의5(유통증명서의 발급) ① 작성자, 송신자 또는 수신자(이하 이 조에서 “신청인”이라 한다)는 유통증명서의 발급을 전달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(신청인을 위하여 해당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전자문서를 송신·수신 또는 중계한 경우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신청할 수 있다.
② 전달기관은 법 제18조의5제2	② 전달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

- 1. 법 제18조의4에 따른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에 관한 사무
 - 2. 제31조의18에 따라 인증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전자문서유통 및 중계업무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
- 제22조의4제2호 중 “지정요건: 2014년 1월 1일”을 “인증요건: 2020년 12월 10일”로 한다.
- 별표 4의 머목, 버목을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통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.

1. ~ 6. (생략)

③ 전담기관은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유통증명서를 종이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유통증명서에 전담기관의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.

④ 전담기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통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원과 신청인이 유통증명서의 정당한 발급신청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제15조의5(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) ① (생략)

② 법 제31조의3제1호바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"이란 지정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.

1. ~ 2. (생략)

중계자는-----

----- 전자서명(이하 "전자서명"이라 한다)을 해야 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③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는 -----

-----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의 기명날인을 해야 -----.

④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는 -----

----- 확인해야 --
-----.

제15조의5(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지정취소 또는 인증취소-----

-----.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3. 지정취소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임직원

제15조의9(증명서 발급의 방법 및 절차) ① (생략)

1.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방법: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공인전자서명을 할 것

2. (생략)

② ~ ⑤ (생략)
제15조의14(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등) ① 법 제31조의18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등"이란 「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조직(전자문서가 「우편법」 제1조의2 제2호에 따른 서신 등 의사전달 물인 경우만 해당한다)을 말한다.

② 법 제31조의18제3항 본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인력·기술능력: 전자문서의 송신·수신 또는 중계에 필요한

3. 지정취소 또는 인증취소-----

제15조의9(증명서 발급의 방법 및 절차) ① (현행과 같음)

1. -----: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전자서명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5조의14(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) ① <삭 제>

② 법 제31조의18제2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설비: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 것

<u>시설 및 장비를 운용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력 3명 이상을 확보할 것</u>			<u>나. 전자문서의 날짜·시각 및 운용기록을 기록·관리하는 설비</u>	
<u>가. 정보통신기사·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것</u>	<u>가. 전자문서 송신·수신 설비</u>		<u>다. 시설·장비 및 정보를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보호설비</u> <u>라. 유통정보의 생성 및 검증 설비</u> <u>마. 시스템 관리 및 복제·저장 설비</u>	3. <삭 제>
<u>나. 가목에서 정하는 자격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</u>	<u>나. 전자문서의 날짜·시각 및 운용기록을 기록·관리하는 설비</u>		3. 재정능력: 자본금 10억원 이상(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5억원 이상으로 하고, 「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인 경우에는 전자문서보관등의 사업과 관련된 국유재산 10억원 이상으로 한다)일 것	
<u>다 ~바. <신 설></u>	<u>다. 시설·장비 및 정보를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보호설비</u> <u>라. 유통정보의 생성·보관 및 검증 설비</u> <u>마. 시스템 관리 및 복제·저장 설비</u> <u>바. 유통증명서 생성·발급 및 보관을 위한 설비</u>		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	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설비----- ----- ----- -----.
<u>2. 시설 및 장비: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</u> <u>가. 전자문서 송신·수신 및 보관 설비</u>	<u>2. 기술능력: 전자문서의 송신·수신 또는 중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</u>		제15조의15(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절차) ① 법 제31조의18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	제15조의15(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절차) ① 법 제31조의18제2항----- 인 증을 받으려는 -----

신부령으로 정하는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지정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임원의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

2. 정관

3. 법 제31조의18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4. 사업계획서(제15조의14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관리·운용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한다)

5. <신 설>

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

----- 인증신청서-----

----- 제출해야 -----.

1. <삭 제>

2. <삭 제>

3. 제15조의14제2항 각 호의 요건-----

4. -----(제15조의14제2항제1호에 따른 설비)-----

5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한다.)

② <삭 제>

서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인이 법 제31조의18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5조의16 <신 설>

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자가 제15조의14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

④ -----
----- 인증-----
----- 신청자에게-----
----- 신청자-----
-----.

제15조의16(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갱신) ①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법 제31조의18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(이하 “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”이라 한다)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을 유지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

	<u>통신부장관에게 그 인증의 갱신을 신청하여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을 갱신해야 한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갱신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.</u>		
<u>제15조의17 <신 설></u>	<u>제15조의17(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사후관리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18제5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.</u> <u>1. 제15조의14제2항제1호에 따른 설비의 보유 여부 및 안전성</u> <u>2. 법 제31조의18제4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의 준수 여부</u> <u>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점검을 하기 15일 전까지 해당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점검의 일시, 목적 및 대상 등을 알려야 한다.</u>	<u>1. ~ 4. (생략)</u> <u>5. 법 제31조의20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</u> <u>6. 법 제31조의2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</u> <u>7. (생략)</u> <u>제22조의3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전담기관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</u> <u>1. <신 설></u> <u>2. <신 설></u>	<u>같음)</u> <u>1. ~ 4. (현행과 같음)</u> <u>5. <삭 제></u> <u>6. 법 제31조의18제5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사후관리</u> <u>7. (현행과 같음)</u> <u>제22조의3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----- 다음 각 호의 -----</u> <u>-----제19조 각 호-----</u> <u>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</u> <u>----</u> <u>1. 법 제18조의4에 따른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에 관한 사무</u> <u>2. 법 제31조의18에 따라 인증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전자문서유통 및 중계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무</u> <u>② (현행과 같음)</u> <u>제22조의4(규제의 재검토) (현행과</u>
<u>제22조의2(권한의 위탁) (생략)</u>	<u>제22조의2(권한의 위탁) (현행과</u>	<u>제22조의4(규제의 재검토) (생략)</u>	

1. (생략)

2. 제15조의14에 따른 공인전자
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: 2014
년 1월 1일

[별표 4]

과태료의 부과기준 (제23조 관련)

1. 일반기준
- 가.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.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.
- 나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
- 1) 위반행위자가 「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 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한 경우
 - 3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4)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
 - 5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	2차	3차
		위반	위반	이상 위반
가. 삭제 <2018. 7. 10.> 나. 법 제18조의6을 위반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수집·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	법 제46조제1	1	2	3
다. 법 제18조의7을 위반하여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한 경우	법 제46조제1	원	원	원
라. 법 제31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준칙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항제2호	천만	천만	천만
마. 법 제31조의8제2항을 위	법 제46조제2	원	원	원
	법 제46조제2	3	4	5

같음)

1. (현행과 같음)

2. 제15조의14에 따른 공인전자
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: 2020
년 12월 10일

[별표 4]

과태료의 부과기준 (제23조 관련)

1. 일반기준
- 가.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.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.
- 나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
- 1) 위반행위자가 「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 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한 경우
 - 3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4)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
 - 5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	2차	3차
		위반	위반	이상 위반
가. 삭제 <2018. 7. 10.> 나. 법 제18조의6을 위반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수집·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	법 제46조제1	1	2	3
다. 법 제18조의7을 위반하여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한 경우	법 제46조제1	천만	천만	천만
라. 법 제31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준칙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항제2호	원	원	원
마. 법 제31조의8제2항을 위	법 제46조제2	원	원	원
	법 제46조제2	3	4	5

반하여 업무준칙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항제3호	백만	백만	백만
바. 법 제31조의8제3항에 따른 업무준칙의 변경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46조제2	원	원	원
사. 법 제31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항제4호	백만	백만	천만
아. 법 제31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	항제5호	원	원	원
자. 법 제31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경우	법 제46조제2	3	4	5
차. 법 제31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되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	항제6호	백만	백만	천만
카. 법 제31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문서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제공·공개 등을 한 경우	항제7호	원	원	원
타. 법 제31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46조제2	원	원	원
파. 법 제31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이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,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이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항제8호	백만	백만	천만
하. 법 제31조의1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양도 또는 합병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	항제9호	원	원	원
거. 법 제31조의14제3항을 위	법 제46조제2	원	원	원
	법 제46조제2	5	7	1

반하여 업무준칙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항제3호	백만	백만	백만
바. 법 제31조의8제3항에 따른 업무준칙의 변경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46조제2	원	원	원
사. 법 제31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항제4호	백만	백만	천만
아. 법 제31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	항제5호	원	원	원
자. 법 제31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경우	법 제46조제2	3	4	5
차. 법 제31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되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	항제6호	백만	백만	천만
카. 법 제31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문서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제공·공개 등을 한 경우	항제7호	원	원	원
타. 법 제31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46조제2	원	원	원
파. 법 제31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이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,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이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항제8호	백만	백만	천만
하. 법 제31조의1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양도 또는 합병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	항제9호	원	원	원
거. 법 제31조의14제3항을 위	법 제46조제2	원	원	원
	법 제46조제2	5	7	1

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 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 하지 않은 경우 너. 법 제31조의15제1항을 위	항제12호	백만 원	백만 원	천만 원	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 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 하지 않은 경우 너. 법 제31조의15제1항을 위	항제12호	백만 원	백만 원	천만 원
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를 이용자에 게 통지하지 않거나 그 사 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더. 법 제31조의15제2항을 위	항제13호	백만 원	백만 원	천만 원	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를 이용자에 게 통지하지 않거나 그 사 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더. 법 제31조의15제2항을 위	항제13호	백만 원	백만 원	천만 원
반하여 보관문서등을 인 계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러. 법 제31조의16제2항을 위	항제14호	백만 원	백만 원	천만 원	반하여 보관문서등을 인 계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러. 법 제31조의16제2항을 위	항제14호	백만 원	백만 원	천만 원
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. 법 제31조의20을 위반하	항제15호	백만 원	백만 원	천만 원	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. 법 제31조의20을 위반하	항제15호	백만 원	백만 원	천만 원
이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비. 법 제31조의21을 위반하	항제16호	백만 원	백만 원	백만 원	이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비. 법 제31조의21을 위반하	항제16호	백만 원	백만 원	백만 원
이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	항제17호	백만 원	백만 원	천만 원	이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	항제17호	백만 원	백만 원	천만 원
서.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	법 제46조제2	5	7	1	서.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	법 제46조제2	5	7	1
여 공인전자문서센터 또 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 용한 경우 어.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	항제18호	백만 원	백만 원	천만 원	여 공인전자문서센터 또 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 용한 경우 어.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	항제18호	백만 원	백만 원	천만 원
여 공인전자문서증게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저.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	항제19호	백만 원	백만 원	천만 원	여 공인전자문서증게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저.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	항제19호	백만 원	백만 원	천만 원
여 공인전자주소 또는 이 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항제20호	백만 원	백만 원	천만 원	여 공인전자주소 또는 이 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항제20호	백만 원	백만 원	천만 원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

연 락 처

(044) 202-6141